

거창군 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11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1. 26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,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 - ※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
- 나. 거창군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 삭제(안 제6조)
- 다. 가산금 규정 삭제함(안 제14조제2항)
 -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'15. 10. 23. ~ 11. 11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5) 성별영향분석 : 반영함(안 제4조제1항단서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담금 또는 가산금을”을 “부담금”으로 “때에는 국세 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가로수위원회) ①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14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③ <u>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가로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다만,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14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-----<u>부담금을</u>----- ----- -----<u>경우에는</u>----- -----</p>